

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교육 규정 주요 변경사항 안내

(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)

▣ 교육개최 목적

지도전문의로서의 필요한 교육자적 자질을 함양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에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함.

▣ 교육주기 및 교육시간

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 (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4시간 및 전문과목 학회별 교육 4시간)을 받아야 함.

- 올해부터 교육 시간 증가

대상자	재교육 주기	비고
2012년 9월 말 이전 지도전문의	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(공통·학회)을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 (온라인교육 포함) 주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로 하며, 이후 재교육 주기는 2021년부터 3년 마다로 함	예시) 2013년, 2014년, 2015년, 이수자 → 2016년 ~ 2020년 사이에 2차 교육 이수 2021년 ~ 2023년 사이에 3차 교육 이수
2012년 9월 말 이후 지도전문의	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5년 으로 하며 이후 재교육주기는 3년 마다로 함	예시) 2013년 이수자 → 2014년~2018년 사이에 2차 교육 이수 2014년 이수자 → 2015년~2019년 사이에 2차 교육 이수 2015년 이수자 → 2016년~2020년 사이에 2차 교육 이수
전공의법 시행규칙 (2016.12.27.) 이후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	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 마다로 함	

▣ 2018년도 교육대상

1. 지도전문의 교육 갱신대상자

1) 기존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중 2012년 9월말 기준 지도전문의 자격을 득하고, 2013년 12월 26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
(지도전문의 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자는 첫 번째 재교육은 5년 후에 이수하고, 두 번째 재교육 부터는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함.)

2)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이수 가능

(* 학회 온라인교육은 내년 상반기 학회 홈페이지 오픈 예정)

2. 2018년 신규 지도전문의

- 1) 2019년도 정원책정 시 신규 지도전문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7년 10월 1일 이후 해당과목 수련병원에서 지도경력이 2018년 9월 말 기준 1년이 된 자
(지도전문의 자격 유지를 희망하는 자는 최초로 지도전문의 교육이수한 후 3년마다 재교육 이수)
- 2) 6개월 이내 대면교육(온라인교육 인정불가)

▣ 학회 교육이수 확인

1. 지도전문의 교육을 계획하고 엄격한 출결 관리(교육시작, 종료)
(교육 종료 후 참석확인이 된 지도전문의만 추후 교육이수증 발급 가능)
2.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증(소정양식)을 발급하고, 이수 확인 결과를 대한의학회로 제출
대한내과학회 홈페이지 → [My Page] → [연수평점 확인] → [지도전문의교육(학회교육)]
→ 교육 이수증 출력